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노원 제6선거구 출신 유 청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61호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치매관리법」에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등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성년

후견 지원사업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자 외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도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후견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도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